

특수자격 인정 범위

분 야	인 정 범 위
행 정	변호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
전 산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, 전자계산기기술사
토 목	토질및기초기술사, 토목품질시험기술사, 토목구조기술사, 도로및공항기술사, 토목시공기술사,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
건 축	건축구조기술사, 건축시공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건축품질시험기술사, 건축사
기 계	기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건설기계기술사,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, 소방기술사, 가스기술사
환 경	수질관리기술사, 대기관리기술사, 소음진동기술사, 폐기물처리기술사, 토양환경기술사
전 기	발송배전기술사, 전기응용기술사,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전기안전기술사, 소방기술사
통신전자	정보통신기술사, 정보관리기술사, 전자응용기술사

※ 외국어 전형의 경우, 선택한 전공시험에 따라 해당 분야 특수자격 인정